



Tax News Flash

August 11, 2025

2025년 세제개편안 금융 관련 주요 내용 정리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삼일에서는 8월 1일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오늘 지난 8월 1일 입법예고한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특법 ·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는, 금융·보험업 교육세 수익금액 1조원 과표구간의 신설 및 세율인상(1%), 법인세율(10~25%) 및 증권거래세율 환원(0.05% 인상),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취득가액 초과분 배당소득세 과세 등이 금융 관련 주요 개편내용으로 보이며, 아래 상세내용 및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주요 내용	적용시기
1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 기간으로 전환 ② 사후관리방식을 최초 공제 후 1~2년간 고용 유지 시 2·3차년도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후속 공제 방식으로 전환 ③ 공제기간 중 일부 고용감소 시 고용증가 인원 중 감소분에 대해서만 공제 배제 ④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재설계 ⑤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 5명/대기업: 10명) 초과분만 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5.12.31. 이전 개시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종전 규정 적용
2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조특법 §104의27 신설)	<p>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 소득(현금배당액으로서 중간/분기/결산배당 포함)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허용*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증가 충족 법인으로, 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분에 대하여 적용 •'25 사업연도에 대하여 '26.4.에 하는 결산배당 분은 분리과세 대상 아님
3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연장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조특칙 §45의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 ②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 상향 (투자포함형: 65~85%/투자제외형: 20~40%) ③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21④·⑤·⑥)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이 중앙은행/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국내 예금, 환매채(RP) 등 원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국채/통안채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93의3) 해당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연장 (조특법 §13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3% → 5%) * 일반공제 공제율(5%)은 현행 유지 ②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1.1. 이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13·§13의2)	벤처투자조합이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해 벤처기업 간접 출자 시 벤처투자 조합을 통한 직접 출자와 동일하게 세제혜택 (비과세/ 세액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연장 (조특법 §87)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구분	주요 내용	적용시기
8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법 §129)	<p>① 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으로 종신수령 시 세율 4 → 3% 인하</p> <p>②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 확대 (감면율: 40→50%)</p>	•'26.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9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연장 (조특법 §88의2)	<p>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가입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의 범위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으로 조정</p> <p>②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p>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 §88의5, §89의3, 조특령 §82의5, §83의3)	<p>①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등에 대해서는 예탁금등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적용 3년 연장(~'28.12.31.)</p> <p>*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가입자 적용</p> <p>②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등은 저율 분리 과세('26년: 5% / '27년: ~ 9%) 적용</p>	•'26.1.1. 이후 출자 또는 가입 하는 분부터 적용
11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 지원 연장 (조특법 §87의2)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12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연장 (조특법 §136)	<p>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전통시장 지출액에 포함시켜 추가 손금산입 허용</p> <p>② 전통시장 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 상향 (10% → 20%)</p> <p>③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p>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조특법 §8의3)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14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 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국기법 §47의4·§47의5)	<p>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일(日) 단위 → 월(月) 단위로 산정하도록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지정납부기한 ~ 납부일: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67%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하되, '26.6. 30.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세액 계산에 관여하는 종전 규정 적용
15	법인세율 환원 (법인법 §55①)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법인세율 상향 조정(10%~25%)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 분부터 적용
16	증권거래세율 환원 (증권령 §5)	<p>증권거래세율을 '23년 수준(0.05%p 인상)으로 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피: 0.05% •코스닥 및 K-OTC: 0.15%로 탄력세율 상향 조정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구분	주요 내용	적용시기
17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소득령 §157①②)	대주주 과세기준 일정 보유금액 (50억 이상 → 10억 이상) 하향 조정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	금융 · 보험업 교육세 개편 (교육세법 §5, 교육세령 §4②)	① 교육세 세율 인상: 과세표준 1조원 초과 시 1% 적용 ②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 서민금융 대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과세표준 제외	①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②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 (소득령 §26의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개인주주의 경우도 대주주등*은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 *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 보유 소액주주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및 연장 (조특법 §72)	①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3% 인상 (12% → 15%) ②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 분부터 적용
21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소득법 §57의2①·②·§129⑤·⑥·⑦, 소득령 §117의2·§189의2)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②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적용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점과 인출 시점 간 장기 시차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공제 방식* 규정 * (일반 배당소득) 펀드가 계좌에 배당소득 지급 즉시 원천징수 및 외납공제 적용 (연금계좌 소득) 펀드가 연금계좌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연금계좌로부터 소득 인출에 따른 원천징수 전까지 외납공제액 적립	①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제 방식 변경 시점 ('25.1.1)부터 시행일 전까지의 간접투자 외국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적립할 계획
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 추가세 도입 (국조법)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 전체의 실효세율 계산 후,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내국 추가세액을 계산하여 부과 •기존의 최저한세 제도와 유사하나, 1) 세부 계산 방법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따른다는 점, 2) 최저한세율이 15%라는 점, 3) 법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구성기업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내국추가세 도입 시, 우리나라 구성기업에서 발생한 내국추가세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과세가능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 분부터 적용
2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종료	적용기한 종료(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	구분	주요 내용	적용시기
	(조특법 §91의20)		
24	연결납세 제도 보완 (법인법 §76의21, §76의9-§76의12, 법인법 §76의13③-§76의14②-§113⑤)	<p>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p> <p>②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 규정 신설: 결손금 대가 지급 시 익금산입(공제받은 법인)/ 손금산입(결손 법인) 제외</p> <p>③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p>	<p>①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p> <p>② '26.1.1. 이후 취소·배제하는 분부터 적용</p>
25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연장 (조특법 §27)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26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 (조특법 §91의18③)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 편입 불가 명확화	
27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종료	적용기한 종료(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중복 제도 정비)	
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연장 (조특법 §104의31)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29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연장 (조특법 §117①.②)	<p>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을 증권 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p> <p>②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p>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0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 (국조법 §41)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투자합자 조합, 투자익명조합을 추가	•'26.1.1. 이후 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1	법인투자자의 간접투자 외국 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 (법인법 §15②-§57의2①-②-③)	<p>① 익금의 범위에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추가</p> <p>② 공제한도금액 계산방식 변경: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에 위 간접투자외국법인 세액을 합산</p> <p>*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 여부와 무관</p>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2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소득법 §156의6, 소득령 §207의8⑧, 법인법 §98의6, 법인령 §138의7⑧)	<p>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p> <p>•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p>	•'26.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 소득 범위 명확화 (법인법 §93)	<p>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배당상당액* 추가</p> <p>*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p>	

#	구분	주요 내용	적용시기
34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 (법인령 §111⑧)	<p>예탁자인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내국법인을 추가</p> <p>*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전문가들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일회계법인 FS Tax LoS

Contacts

박 수 연 Partner

soo-yun.park@pwc.com

02-709-4088

정 훈 Partner

hoon.gp6.jung@pwc.com

02-709-3383

김 종 육 Partner

jang-wook.fs.kim@pwc.com

02-3781-9091

박 주 원 Partner

ju-won.park@pwc.com

02-709-8706



삼일PwC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다양한 산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와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ption](#).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발췌본

기획재정부

1.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통합고용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액 개편, 사후관리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증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증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3">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3년)</th> <th>중견</th> <th>대</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3년)</th> <th>(2년)</th> </tr> </thead> <tbody> <tr> <td>우대*</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r> <td>기본</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body> </table> <p>*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p>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대	수도권	지방	(3년)	(2년)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3">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3년)</th> <th>중견</th> <th>대</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3년)</th> <th>(2년)</th> </tr> </thead> <tbody> <tr> <td>우대*</td> <td>1년차 2년차 3년차</td> <td>700 1,600 1,700</td> <td>1,000 1,900 2,000</td> <td>500 900 900</td> <td>300 500 -</td> </tr> <tr> <td>기본</td> <td>1년차 2년차 3년차</td> <td>400 900 1,000</td> <td>700 1,200 1,300</td> <td>300 500 500</td> <td>-</td> </tr> </tbody> </table> <p>*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p>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대	수도권	지방	(3년)	(2년)	우대*	1년차 2년차 3년차	700 1,600 1,700	1,000 1,900 2,000	500 900 900	300 500 -	기본	1년차 2년차 3년차	400 900 1,000	700 1,200 1,300	300 500 500	-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대																																																
	수도권	지방	(3년)	(2년)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대																																																	
	수도권	지방	(3년)	(2년)																																																	
우대*	1년차 2년차 3년차	700 1,600 1,700	1,000 1,900 2,000	500 900 900	300 500 -																																																
기본	1년차 2년차 3년차	400 900 1,000	700 1,200 1,300	300 500 5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 (적용기한) '2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 제) -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 ○ '28.12.31. 																																																	

<개정이유>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견) 5명, (대기업) 10명○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개정이유> 중견·대기업의 고용 증대 유인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의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① 또는 ② 충족 법인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 공모 · 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현금배당액(중간 · 분기 · 결산배당 포함) -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과세표준</td> <td style="width: 25%;">2천만원 이하</td> <td style="width: 25%;">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 style="width: 25%;">3억원 초과</td> </tr> <tr> <td>적용세율</td> <td>14%</td> <td>20%</td> <td>35%</td> </tr> </table> ○ (적용기간)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되는 배당분까지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

3.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조특칙 §45의1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방식) 미환류소득* $\times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환류대상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times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8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 $\times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환류대상) 	<input type="checkbox"/> 제도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8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20~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가중치</th> </tr> </thead> <tbody> <tr> <td>투자</td> <td>1</td> </tr> <tr> <td>임금증가(①+②+③)</td> <td></td> </tr> <tr> <td>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td> <td>1~2</td> </tr> <tr> <td>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td> <td>1</td> </tr> <tr> <td>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td> <td>1</td> </tr> <tr> <td>상생협력 지출액</td> <td>3</td> </tr> </tbody> </table>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①+②+③)		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가중치</th> </tr> </thead> <tbody> <tr> <td>투자</td> <td>1</td> </tr> <tr> <td>임금증가(①+②+③)</td> <td></td> </tr> <tr> <td>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td> <td>1~2</td> </tr> <tr> <td>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td> <td>1</td> </tr> <tr> <td>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td> <td>1</td> </tr> <tr> <td>상생협력 지출액</td> <td>3</td> </tr> <tr> <td>배당*</td> <td>1</td> </tr> </tbody> </table>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①+②+③)		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배당*	1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①+②+③)																															
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①+②+③)																															
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배당*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금전배당 (결산배당 및 중간·분기배당) ○ '28.12.31.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21④·⑤·⑥)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소득 등 비과세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수수료 등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한 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외화증권 등 양도소득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소득에 국제결제은행 (BIS)의 국내 투자소득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방법) ① 또는 ② ① (직접투자) 국내 보관 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 ② (간접투자) 적격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법인 - (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의 원화자산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세액공제</p> <p>○ (세액공제율)</p> <p>① 직·간접* 출자: 주식 등 취득가액의 5%</p> <p>*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p> <p>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출자금액*의 5% +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의 3%</p> <p>* Max(벤처기업 주식 등 취득가액,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액의 60%)</p> <p>○ (적용기한) '25.12.31.</p>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p> <p>○ (세액공제율)</p> <p>① (좌 동)</p> <p>②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5%</p> <p>○ '28.12.31.</p>

<개정이유>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①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13·§13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창업·벤처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간접 출자분 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창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5% 세액공제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간접 출자분 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 ○ '2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 (적용기한) '2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28.12.31.
<input type="checkbox"/>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4세)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원) ○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 (적용기한) '2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28.12.31.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 및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8.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사적연금 (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 * 연금수령일 기준 -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input type="checkbox"/> 종신계약시 세율 인하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 (좌 동) </div>
<input type="checkbox"/> 이연퇴직소득 (회사 부담분)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 연금 수령연차에 따른 세액 (연금수령시 세액 감면) - 1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 1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input type="checkbox"/> 장기수령시 감면율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 (좌 동) </div>
<신 설>	-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 2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9.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8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등 - 65세 이상 노인 ○ (납입한도) 5천만원 ○ (적용기한) '25.12.31. 	<p><input type="checkbox"/>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① 농·어·임업인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조특법 §88의5·§89의3, 조특령 §82의5·§83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감면	<input type="checkbox"/>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 ○ (대상소득)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 (감면한도)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 ○ (과세특례) 소득발생 기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과세특례) 가입일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p>① 농·어·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입자</p> <p>*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소득발생 기간</th><th>'25.12.31. 까지</th><th>'26.1.1. ~ '26.12.31.</th><th>'27.1.1. 부터</th></tr> </thead> <tbody> <tr> <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 </tbody> </table>	소득발생 기간	'25.12.31. 까지	'26.1.1. ~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가입일</th><th>'28.12.31. 까지</th><th>'29.1.1. ~ '29.12.31.</th><th>'30.1.1. 부터</th></tr> </thead> <tbody> <tr> <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 </tbody> </table>	가입일	'28.12.31. 까지	'29.1.1. ~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소득발생 기간	'25.12.31. 까지	'26.1.1. ~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가입일	'28.12.31. 까지	'29.1.1. ~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p>②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가입자 (농·어·임업인 조합원 제외)</p> <p>*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가입일</th><th>'25.12.31. 까지</th><th>'26.1.1. ~ '26.12.31.</th><th>'27.1.1. 부터</th></tr> </thead> <tbody> <tr> <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 </tbody> </table>	가입일	'25.12.31. 까지	'26.1.1. ~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가입일	'25.12.31. 까지	'26.1.1. ~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개정이유〉 농·어·임업인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87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농어민○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12.31.

〈개정이유〉 농어민 자산 형성 지원

12.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손금산입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비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② 전통시장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 * 일반유통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적용기한) '25.12.31. 	<p><input type="checkbox"/> 특례대상 · 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 동) ②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 일반유통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28.12.3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의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p> <p>○ (세액공제율)</p> <p>①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p> <p>*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p> <p>②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p> <p>③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투자금액의 1/3/7%(대/중견/중소기업)</p> <p>④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해당 자산 시가의 10%</p> <p>○ (적용기한) '25.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28.12.31.</p>

<개정이유>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14.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국기법 §47의4·§47의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납부지연 가산세(①+②)	<input type="checkbox"/> 지연이자 계산 방식 개편
<p>① 지연 이자 상당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p>*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p>	<p>①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지정납부기한 ~ 납부일 :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67%
<p>② 체납에 대한 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세액 × 3% 	②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2025.8.11. 재입법예고 변경사항)

15.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input type="checkbox"/> 법인세율 상향 조정																				
○ (일반법인)	○ (좌 동)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표</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0~2억원</td><td>9%</td></tr> <tr> <td>2~200억원</td><td>19%</td></tr> <tr> <td>200~3,000억원</td><td>21%</td></tr> <tr> <td>3,000억원 초과</td><td>24%</td></tr> </tbody> </table>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표</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0~2억원</td><td>10%</td></tr> <tr> <td>2~200억원</td><td>20%</td></tr> <tr> <td>200~3,000억원</td><td>22%</td></tr> <tr> <td>3,000억원 초과</td><td>25%</td></tr> </tbody> </table>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좌 동)																				
<p>*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p> <p>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p> <p>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p> <p>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표</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200억원 이하</td><td>19%</td></tr> <tr> <td>200~3,000억원</td><td>21%</td></tr> <tr> <td>3,000억원 초과</td><td>24%</td></tr> </tbody> </table>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표</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200억원 이하</td><td>20%</td></tr> <tr> <td>200~3,000억원</td><td>22%</td></tr> <tr> <td>3,000억원 초과</td><td>25%</td></tr> </tbody> </table>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65)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증권거래세 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세율: 0.35%○ 탄력세율❶ (코스피) 0% (농특세 0.15%)❷ (코스닥 · K-OTC) 0.15% (농특세 없음)❸ (코넥스) 0.1% (농특세 없음)	<p><input type="checkbox"/> 세율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탄력세율❶ 0.05% (농특세 0.15%)❷ 0.20% (농특세 없음)❸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 §157①·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input type="checkbox"/> 과세기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원 이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지분율</th><th>보유금액</th></tr> </thead> <tbody> <tr> <td>코스피</td><td>1%</td><td rowspan="3">50억원</td></tr> <tr> <td>코스닥</td><td>2%</td></tr> <tr> <td>코넥스</td><td>4%</td></tr> </tbody> </table>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5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지분율</th><th>보유금액</th></tr> </thead> <tbody> <tr> <td>코스피</td><td></td><td></td></tr> <tr> <td>코스닥</td><td>좌 동</td><td rowspan="2">10억원</td></tr> <tr> <td>코넥스</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코스닥	좌 동	10억원	코넥스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5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코스닥	좌 동	10억원																				
코넥스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① 교육세 세율 인상(교육세법 §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수익금액</td> <td>0.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0.5%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수익금액 1조원 이하</td> <td>0.5%</td> </tr> <tr> <td>1조원 초과</td> <td>1.0%</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0.5%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②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교육세령 §4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용역 가액 ○ 내부적·일시적인 인식 수익 ○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개정이유〉 저소득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의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 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p style="margin-left: 2em;"><신 설></p>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p><input type="checkbox"/>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①상장법인의 대주주 ②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0.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87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 (적용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표 20억원 이하: 9% - 과표 20억원 초과분: 12% ○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자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 (적용기한) '25.12.31. 	<p><input type="checkbox"/> 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적용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12 → 15%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소득법 §57의2①·②·§129⑤·⑥·⑦)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종합소득금액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 (좌 동) ○ 퇴직소득금액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배당소득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 (좌 동)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
(소득령 §117의2·§189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소득이 포함된 경우 ○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공제적립액 계산* 및 누적 합산 <p>*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로, 국내 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p> <p>** 공제적립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times $(\frac{9\%}{14\%} -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적용) 연금계좌 인출 또는 계좌이전*으로 세액 발생 시마다 해당 세액에서 공제적립액을 차감 <p>* 근로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p>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①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국조법 §7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 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 계산된 내국추가세액은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 <p><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액의 계산</p> <p>※ 내국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p> <p>*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제외한 금액</p> <p><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식* 규정(① 또는 ② 중 택1)</p> <p>* 각 구성기업에 배분된 내국추가세액은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정의</p> <p>①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 규정</p> <p>* 각 구성기업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규모에 비례하여 배분(대통령령)</p> <p>② (지정배분)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p>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국조법 §7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무국적구성기업</p> <p>○ 내국추가세 적용 시, 무국적구성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설립·등록된 투과기업* 등의 경우 소재지국을 국내로 보아 내국추가세액 계산</p> <p>*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기업</p> <p>○ 실효세율 및 내국추가세액은 각 기업별로 타 국내구성기업과는 별도의 단위로 계산</p>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 §63·§8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내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납부세액의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input type="checkbox"/>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으로 추가세액을 배분받은 구성기업 - (신고기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 (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 (분납) 2천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내국추가세의 결정 · 경정 · 통지 및 징수(국조법 685)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 · 경정 · 수시부과 · 통지 · 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세액배분액 미신고시 과세당국이 세액 결정 가능 ○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을 시 과세당국이 세액 경정 가능 ○ 추가세액 포탈 우려 시 수시부과 가능 ○ 과세당국은 결정·경정시 이를 기업에 통지 필요 ○ 추가세액 미납시 과세당국은 미납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가능 	<p><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p>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74)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최소적용제외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건) 해당국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가 일정액 미만[*]일 것<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 GloBE매출액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평균 GloBE순소득이 1백만유로 미만○ (효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p><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p>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675·67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에서 별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단위	<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① 소수지분하위그룹 또는 소수지분구성기업	
②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그룹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679)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의 투자구성 기업*의 계산 특례</p> <p>*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p> <p>○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①별도 계산*, ②투시과세처리**, ③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p> <p>*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p> <p>**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p> <p>***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p>	<p><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p>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적용면제 특례(국조법 §8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적용면제	<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p>① 전환기 적용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초기,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transitional)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①소액 ②간이 실효세율 또는 ③초과이익 요건 -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p>② 일반적 적용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기 종료 이후 적용되며,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91의20)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요건) 19~34세,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p>

<개정이유>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24. 연결납세 제도 보완

①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법인법 §76의2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개정이유> 연결법인 가산세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법인법 §76의9·§76의1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결납세방식 취소·배제시 결손금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한)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배제시○ (공제받은 법인) 기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악금산입 <단서 신설>○ (결손 법인)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산입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좌 동)<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악금산입 제외○ (좌 동)<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산입 제외

<개정이유> 연결납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취소·배제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13③·§76의14②·§113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이 적격합병한 경우 이월결손금,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연결모법인 적격합병 후 5년 내 발생한 자산처분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전에도 보유하던 자산)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input type="checkbox"/>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 (좌 동)
<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이 합병*한 경우 구분경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분할합병한 경우만 해당 ○ 연결모법인이 합병으로 승계 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 	<input type="checkbox"/>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등 공제 명확화

④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합리화(법인령 6120의1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법인 전체 제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적용제외 법인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right;">-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p> <p>*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p>○ (좌 동)</p>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5.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세율) 14% ○ (한도) 투자금액 1억 원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12.3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활성화

26.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조특법 §91의18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가능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적금·예탁금 ○ 파생결합증권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 집합투자증권 <p><단서 신설></p>	<input type="checkbox"/> 역외펀드 편입 불가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 기구(역외펀드) 제외</p>

<개정이유> ISA 지원대상 명확화

27.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2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요건*) ① &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① 19~34세 ②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운용가능재산) 예·적금, 회사채, 국내상장 주식 등 ○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통산,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한도) 연 840만원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 요양·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경우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p>

<개정이유> 청년미래적금(하반기 중 발표 예정) 출시에 따라
중복 제도 정비

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1)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상당한 시간·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 ②본점 외 영업소나 직원·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 ③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등 ○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 (제외)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해 그 배당에 대한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 (적용기한) '25.12.31.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29.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주식 ·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금융투자업자 ○ (적용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거래소 개설 증권시장 <p style="margin-left: 20px;"><추 가></p> ○ (적용기한) '25.12.31. 	<p><input type="checkbox"/>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p> <p style="margin-left: 20px;">○ (좌 동)</p> <p style="margin-left: 20px;">-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p> <p style="margin-left: 20px;">*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p> <p style="margin-left: 20px;">○ '28.12.31.</p>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0.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조법 §4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 가> 	<input type="checkbox"/> 발급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 <p>*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의명조합</p>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 조세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 조세목적상 거주자 ·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1. 법인투자자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법인)

법 §15②·§57의2①·②·③)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익금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 익금으로 보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인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유가증권 매입 시 시가와 매입가 차액 상당액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p><input type="checkbox"/> 법인세 신고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 세액에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 (공제한도금액) $A \times B /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산출세액 -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 - C: 과세표준 ○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 	<p><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금액 계산 방식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 여부와 무관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가 반영되는 결과 ○ (좌 동)

<개정이유>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2.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소득법 §156의6, 소득령 §207의8⑧, 법인법 §98의6, 법인령 §138의7⑧)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등* 보관</p> <p>*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p> <p><input type="radio"/> (보관기간) 원천징수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5년</p> <p>* 지급일(원천징수일) 다음달 10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radio"/>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p> <p><input type="radio"/>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p> <p>*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동일</p>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법인법 69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p>* ❶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은 금액 ❷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배당상당액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34.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 (법인령 §111⑧)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채등: 한국예탁결제원 ○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국채등: 예탁자 <추 가> 	<p><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예탁자인 국제예탁결제 기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해당 내국법인 <p>*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p>

<개정이유> 국채등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 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 국세징수법	국징법	국징령	국징칙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 종합부동산세법	종부법	종부령	종부칙
▪ 부가가치세법	부가법	부가령	부가칙
▪ 개별소비세법	개소법	개소령	개소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 교육세법	교육세법	교육세령	교육세칙
▪ 증권거래세법	증권법	증권령	증권칙
▪ 주세법	주세법	주세령	주세칙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면허법	주류면허령	주류면허칙
▪ 관세법	관세법	관세령	관세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특법	환특령	환특칙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발췌본

기획재정부

1.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현행 제도

□ (공제대상)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임시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제외

- 상시근로자 수는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에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 (공제액) 기업규모·소재지·우대대상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육아휴직 복귀자는 추가 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

① 기본공제	공제액(단위:만원)				② 추가공제(1년)	공제액(단위:만원)	
	증소(3년)		증견	대		증소	증견
	수도권	지방	(3년)	(2년)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 (공제기간 및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최대 3년간 지원,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지원 중단 및 공제받은 금액 전액 추징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사후관리 방식 전환 및 공제액 구조 재설계 등

- ①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 기간으로 전환
- ② 사후관리 방식을 최초 공제후 1~2년간 고용 유지시 2·3차년도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후속공제 방식으로 전환
- ③ 공제 기간중 고용이 일부 감소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 중 감소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 유지

④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재설계

		공제액(단위:만원)			
		증소(3년)		증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그 외 상시근로자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
	3년차	1,000	1,300	500	-

⑤ 증견·대기업의 경우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고용이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개정 취지) 사후관리 방식 전환으로 납세협력비용이 경감되고, 상시근로자 판단기준 전환 및 점증 형태의 공제액 구조를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 유인을 강화
 - 현행 사후관리 방식은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 납세자 입장에서 사후 경정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
 - * 공제기간 중 고용 일부 감소시 잔여 공제기간 동안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배제 → 기업 입장에서는 과세연도 종료시마다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보다 최종적인 고용 증가 유지분만을 반영하여 사후 경정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
 - 기업의 장기고용 유인 강화를 위해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개선*하고,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재설계
 - * (현행)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 (개정) 실제 근로 기간 1년 이상

③ 적용 시점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 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5.12.31. 이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예시

□ 중소기업(비수도권)의 경우

○ (현행) 3년간 총 22,150만원 세액공제

	Y ₀ (기준연도)	Y ₁	Y ₂	Y ₃
전체 상시근로자*	3	8 (+5)	8 (-)	10 (+2)
우대(청년등)	2	5 (+3)	5 (-)	6 (+1)
기타(청년등외)	1	3 (+2)	3 (-)	4 (+1)
공제세액(만원)	-	6,550	6,550	9,050
1차년도	-	(우대) 3×1,550 (기타) 2×950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없음)	(우대) 1×1,550 (기타) 1×950
2차년도	-	-	(우대) 3×1,550 (기타) 2×950	(전년도(Y ₂) 1차년도 공제 없음)
3차년도	-	-	-	(우대) 3×1,550 (기타) 2×950

* 1년 이상 근로계약시 고용 시점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

○ (개정) 3년간 총 22,800만원 세액공제

	Y ₀ (기준연도)	Y ₁	Y ₂	Y ₃
전체 상시근로자*	3	8 (+5)	8 (-)	10 (+2)
우대(청년등)	2	5 (+3)	5 (-)	6 (+1)
기타(청년등외)	1	3 (+2)	3 (-)	4 (+1)
공제세액(만원)	-	4,400	8,100	10,300
1차년도	-	(우대) 3×1,000 (기타) 2×700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없음)	(우대) 1×1,000 (기타) 1×700
2차년도	-	-	(우대) 3×1,900 (기타) 2×1,200	(전년도(Y ₂) 1차년도 공제 없음)
3차년도	-	-	-	(우대) 3×2,000 (기타) 2×1,300

* 실제 근로 기간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

⑤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적용 예시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5명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경우

	Y_0 (기준연도)	Y_1	Y_2	Y_3
전체 상시근로자	3	10 (+7→+2)	13 (+3→+0)	21 (+8→+3)
우대(청년등)	2	6 (+4→+2)	7 (+1→+0)	9 (+2→+2)
기타(청년등外)	1	4 (+3→+0)	6 (+2→+0)	12 (+6→+1)
공제세액(만원)	-	1,000	1,800	3,100
1차년도	-	(우대) 2×500 - (전체 상시 증가 ≤ 5)	- (우대) 2×500 (기타) 1×300	- (전년도(Y_2) 1차년도 공제 없음)
2차년도	-	-	(우대) 2×900 - -	(우대) 2×900 - -
3차년도	-	-	-	(우대) 2×900 -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공제액을 기타(청년등외상시근로자)에서 먼저 차감 후 우대(청년등상시근로자)에서 차감(표에서 굵은 글씨)

2.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지적
 -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 및 경제 선순환 제고
- **(개정 내용)**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허용
 - **(고배당기업)**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①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②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 공모·사모펀드, 부동산리츠, SPC 등 제외
 - **(대상)** 고배당기업 주식 소유 거주자
 - **(특례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② 시행 시기

-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액에 대하여 지급
 - 따라서, 시행 첫 해에는 ‘27년도 결산배당을 통해 산정되는 배당성향 및 배당증가액에 의해 고배당 기업 여부 판정

③ 적용 사례

- (가정) A기업이 '26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26.8월에 중간배당(❶), '27.4월에 결산배당(❷) 시행
 - A기업의 '26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
- (특례 적용)
 - A기업 주주는 '2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27.5월)를 통해
'26년 소득인 중간배당(❶)에 대해 특례 적용 가능
 - '27년 소득인 '26년 사업연도의 결산배당(❷)은 '28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28.5월)시 특례 적용 가능

④ 납세 절차

- 특례 대상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원천징수를 통해 종결
- 특례 대상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특례 적용을
위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 함께 신고할 필요

3.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① 현행 제도

- (적용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투자 · 임금증가 · 상생협력 지출액으로 환류한 금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한 경우 20% 추가 과세
 - ①, ② 방식 중 선택 허용
 - ① [기업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②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 당기소득 3천억원 초과분은 제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 상향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좌 동) + 배당
기업 소득 비율	투자포함형(①)	60~80%*	65~85%
	투자제외형(②)	10~20%**	20~40%

* 대통령령에서 70%로 규정 / ** 대통령령에서 15%로 규정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③ 배당을 환류대상에 포함한 이유

- 우리 중시의 저평가를 극복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필요
 - 배당 증가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및 배당을 선호하는 주주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선순환 기대

4.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① 개정 취지

- (현황) 국제결제은행(BIS^{*})은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 중앙은행·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

* '25.4월 기준 63개국 중앙은행 회원 가입

- BIS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통안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 (법인법 §93의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채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개정 취지) BIS는 원화표시자산 투자 확대를 위해 국채·통안채 이외에 예금·RP·파생상품 등 투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요청

* 미국·일본 등 다수국은 BIS에 대해 협정·별도법령·면세조항 등에 따라 투자소득 면세 적용 중

② 기대 효과

- BIS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통한 ①국내 금융기관의 영업기회 확대, ②외환시장 참여자 다변화, ③시장 유동성 제고 등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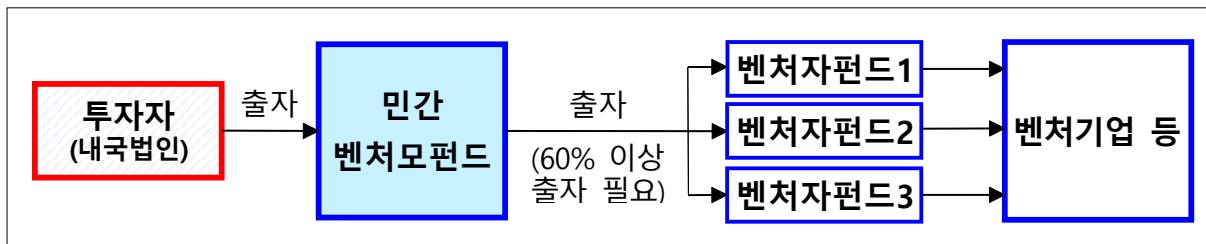
5.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① 개정 내용

- (현행 제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 (일반공제)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금액^{*}의 5%
* 벤처기업 등 주식 취득가액과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액의 60% 중 큰 금액
 - (추가공제) 벤처기업 등 출자 증가분의 3%
- (개정 내용) 추가공제 공제율을 3→5%로 상향
※ 일반공제 공제율(출자금액의 5%)은 현행 유지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② 민간 벤처모펀드의 구조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
 - 조성액의 60% 이상은 벤처자펀드에 출자 필요



③ 추가 공제율을 상향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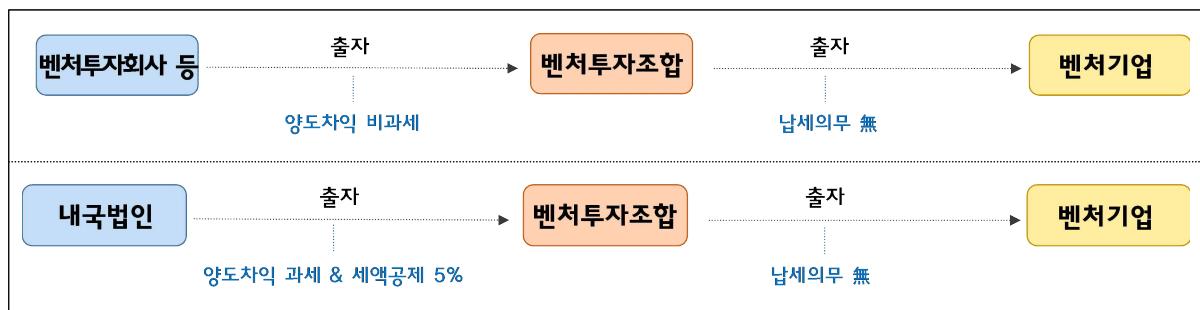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
- 일반 공제율은 내국법인의 다른 벤처투자(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간접 출자)에 대한 공제율(5%)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유지

6.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① 현행 제도

-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해 출자자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 등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 중
 - (개인 및 벤처투자회사) 양도차익(양도소득) 비과세
 - (일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시 세부담>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내용 및 취지)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비과세, 세액공제) 적용

* 벤처투자조합 단독으로 100% 출자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가 벤처투자 단계에 추가 되더라도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함
- (적용기한) '28.12.31.

(7) 민·관 합동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 첨단·벤처·혁신 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 부처에서 검토 중이나, 투자 대상 산업 등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 추후 펀드 조성 방안이 보다 구체화되면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

10. 상호금융 예탁금 · 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① 현행 제도

- 상호금융* 예탁금 · 출자금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해 '25년 말까지 비과세('76년 이후 비과세)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 (저율 분리과세 전환) ('26년) 5% 분리 과세 ('27년~) 9% 분리과세
 - *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본세율 : 14%
- (대상자) 조합원 · 회원 및 준조합원
- (감면한도)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2천만원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등에 대해서는 예탁금등 이자 ·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3년 연장(~'28.12.31.)

* 서민형ISA 가입조건과 동일한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적용

-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등은 저율 분리과세 ('26년 5%, '27년~ 9%)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농협 ·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비과세	비과세
	준조합원	비과세	비과세
신협*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총급여 5천만원 초과**	비과세	
새마을금고*	조합원	비과세	비과세
	회원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 준조합원 및 준회원이 없음 ** 종합소득금액은 3,800만원 기준

※ (시행 시기) '26.1.1. 이후 출자 또는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 취지) 농어민·서민층 지원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

- 다만, 비과세 혜택의 장기 지속, 상호금융 이외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은 예정대로 분리과세 시행

③ 농어민 지원 축소 및 상호금융 경영여건 악화 우려

- 농어민과 임업인이 대상인 농·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는 연장
 - 동 제도 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어민형 ISA 등 여러 조세지원 제도가 있는 점도 고려 필요
- '25.9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일부 가입자에 대하여 과세전환 시에도 저율(5~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점 고려할 필요

12.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현행 제도

- (일반한도)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을 허용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 (추가한도) 특정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금 인정
 - (문화비*) 일반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인정
 - *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회 · 박물관 입장료, 음반 · 영상물 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 (전통시장 지출액) 일반한도의 10%까지 추가로 인정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추가 손금산입 허용(전통시장 지출액에 포함)
 - 전통시장 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10→20%)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개정 취지) 지역경제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14.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① 현행 제도

-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의 0.022% 가산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납세자가 직접 일 단위 계산·납부하는 불편 완화
 - * 납부고지일까지는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산정·고지하므로 현행 유지
- (개정 내용)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일(日) 단위 → 월(月) 단위로 산정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현행-개정 비교>

	법정납부기한	고지일	지정납부기한
현행	1일당 0.022% <국세청 계산>	X	1일(日)당 0.022% <납세자 직접 계산>
개정	(상 동)	X	1월(月)당 0.67% <납세자 직접 계산>

15. 법인세율 환원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과세표준(억원)	현행	개정안
~ 2	9%	10%
2 ~ 200	19%	20%
200 ~ 3,000	21%	22%
3,000 ~	24%	25%

- (개정 취지)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

* 조세부담률(%): ('20) 18.8 ('21) 20.6 ('22) 22.1 ('23) 19.0 ('24^p) 17.6

** 법인세수 실적(조원): ('22) 103.5 ('23) 80.4 ('24) 62.5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이 선결 과제임

②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 최근 세계 주요국은 경제·정치상황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방향도 상이

○ 최근 영국·프랑스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중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는 아님

* (英) '23년 법인세율 19 → 25% 인상

(佛) '25년 대기업에 한해 한시적('25년) 법인세율 인상

(기본 법인세율 25%, 매출액 10억유로 이상 +5.2%p, 30억유로 이상 +10.3%p)

□ 법인세율 인상시 OECD국가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국가들과 비교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비슷^{*}한 수준

* OECD 중 G20국가: 23.4%(지방세 포함 27.4%),

OECD 중 30-50국가(GDP 인당 3만불-5천만명): 22.5%(지방세 포함 27.2%)

16. 증권거래세율 환원

① 현행 증권거래세율 및 최근 조정 연혁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15%	0.10%	0.08%	0.08%	0.05%	0.03%	0%
	농어촌특별세	0.15%	0.15%	0.15%	0.15%	0.15%	0.15%
	코스닥	0.30%	0.25%	0.23%	0.23%	0.20%	0.18%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연계하여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였으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재검토
 -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
- (개정 내용) 증권거래세율을 '23년 수준(0.05%p 인상)으로 환원

③ 시장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
 - * '19~'24년 증권거래세율 5회 인하 후 거래대금 2회 감소, 주가지수 1회 하락 (인하 전후 6개월 평균 비교)
 - 대내·외 경제 상황 등 경제 환경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

17.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① 현행 기준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하여 분리과세하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 · 25% 세율로 과세

* 종목당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분율 1~4% /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시가총액		50억원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에 따라 환원

* 대주주 기준이 변경된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
- '17년말 대주주 기준 강화시 주가가 상승한바 있으며, '23년말 대주주 기준 완화시 주가가 하락한바 있음

-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여 과세형평 확보

- (개정 내용)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을 50 → 10억원 이상으로 조정

③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 증가 등 시장 불안정은 없는지?

- 기준 조정에 따라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연말 매도 완화 효과는 불분명*

* 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연도 간에도 순매수·순매도의 일관성이 없으며 기준이 강화된 '17년, '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3년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

- 시장 수익율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

18.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① 현행 제도

- '81년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를 위한 교육재정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목적세('91년 영구세 전환)
 -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종전의 금융기관 영업세(수익금액의 1%) → 교육세(수익금액의 0.5%)로 전환하여 운영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수익금액 1조원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과표구간(수익금액)	현 행	개 정 안
0~1조원	0.5%	0.5% (현행유지)
1조원 초과		1.0%

- (개정 취지) '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으므로, 그 간의 금융·보험업 성장률* 등 고려

* 금융·보험업의 국내총부가가치 : ('81년) 1.8조 → ('23년) 138.5조 (75배↑)

- 또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적용 대상을 부담 여력이 있는 초대형 금융보험회사(약 60개)에 한정

1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① 현행 제도

-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을 수용하여 회계처리된 배당재원별로 구분하여 과세
 - (이익잉여금 배당) 이익의 분배로 보아 배당소득 과세
 - (자본잉여금 배당) 통상 주주가 출자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보아 주당 취득가액을 감액하고, 배당소득 비과세
- 다만,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법인주주에 한하여 해당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중
 -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은 기존에 출자한 금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국가도 일반적으로 과세
 - 다만, 개인주주의 경우 현재 개별 취득가액 파악이 곤란하여 집행가능성을 감안,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비과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개인주주의 경우도 대주주 등*은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
 - * ①상장법인의 대주주
 - ②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 보유 소액주주 제외)
- (개정 취지) 집행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등*'만 우선하여 적용
 - * ①상장법인의 대주주, ②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 보유 소액주주 제외)

③ 적용사례

① (가정1) 주주1의 A상장법인의 보유주식 평균 취득가액 2만원
A사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주당 0.2만원

○ (배당소득 과세여부) 비과세

- A사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 1.8만원($2 - 0.2$)으로 조정
- 주주1이 대주주^{*}인 경우 향후 A주식 양도시 1주당 양도차익 0.2만원 증가하므로 감액배당을 통한 취득가액 조정분은 양도 소득세로 과세이연

* 현재 대주주가 아닌 경우, 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가정2) 주주2의 B상장법인의 보유주식 평균 취득가액 0.1만원
B사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주당 0.2만원

○ (배당소득 과세여부) 과세

- B사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 0원($0.1 - 0.1$)으로 조정
- 주주2가 대주주인 경우 취득가액 초과분 0.1만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향후 B주식 양도시 1주당 양도차익 0.1만원 증가하므로 감액배당을 통한 취득가액 조정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20.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① 현행 제도

- 조합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등 9개 항목**만 세무조정 후 저세율(9%, 12%)로 법인세 과세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총 8개

**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3%p 인상(12→15%)하고 적용기한 연장(~'28.12.31.)

- (개정 취지) 소규모 조합법인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비영리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세율 인상

③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 여력이 되는 일부 고수익 조합법인(전체 조합법인 중 11.5%)*만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음

* 전체 조합법인 4,107개 중 과표 20억원 초과 법인은 474개(11.5%) ('24년 신고분)

- 과표 20억원 이하 영세 조합법인에 대한 세율은 변동이 없고, 20억원 초과구간의 경우도 일반법인 대비 세율이 크게 낮음

- 심층평가 결과* 및 농어민을 직접 지원하는 다양한 과세특례**가 운영중인 점 고려,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 20억원 초과 조합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이 법인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실증 증거 부족('22년 심층평가)

** 농·어민의 조합법인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21.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① 현행 제도 및 개정 취지

- (현행 제도) '25.1.1.부터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이 변경^{*}되었으나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적용 중

* (기존) 국세청 선환급 방식 → (개정) 투자자별 펀드 소득 발생 시 외국납부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원천징수

**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 (개정 취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되,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점과 인출 시점 간 장기 시차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공제 방식^{*} 규정

* (일반 배당소득) 펀드가 계좌에 배당소득 지급 즉시 원천징수 및 외납공제 적용
(연금계좌 소득) 펀드가 연금계좌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연금계좌로부터 소득 인출에 따른 원천징수 전까지 외납공제액 적립

② 시행일('26.7.1.) 이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 시행일은 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내부 전산 시스템 등 준비기간을 고려했으며,

- 공제 방식 변경 시점('25.1.1)부터 시행일 전까지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적립할 계획

③ 적용사례

※ 간접투자소득 1,000, 국외원천세율 14% 가정

□ (적립단계) 외국납부세액 140, 외납 後 소득 860, 공제적립액 77.4*

$$* \frac{140}{\text{외납세액}} \times \{ (9\% / 14\%) - 9\% \} \hookrightarrow \text{공제율(약55.3%)}$$

[간접투자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인출 시]

□ (공제단계) 간접투자 소득 860을 월 215씩 4개월에 걸쳐 연금 소득 수령, 연금소득세율 4%인 경우

$$\rightarrow \text{월별 원천징수세액 } \frac{8.6}{215}(\text{연금소득} \times 4\%) \times 4\text{개월} = 34.4$$

$$215 \times 4\%$$

⇒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액 전액 공제
(공제적립액 잔액 $77.4 - 34.4 = 43.0$)

[간접투자 소득을 연금 외 소득(기타소득)으로 인출 시]

□ (공제단계) 간접투자 소득 860을 연금소득과 연금 외 소득(기타 소득)으로 전액 인출*, 연금소득세율 4%, 기타소득세율 15% 인 경우
→ 원천징수세액: $\frac{8.6}{215}(\text{연금소득} \times 4\%) + \frac{96.75}{645}(\text{기타소득} \times 15\%) = 105.35$

$$215 \times 4\% \qquad \qquad \qquad 645 \times 15\%$$

* 연금소득 215, 연금외소득(연금소득 초과분) 645로 가정

⇒ 공제적립액(77.4) 전액 차감 후 잔여 세액($105.35 - 77.4 = 27.95$) 납부

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① 내국추가세 개요 및 적용 예시

◇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부족과세분을 우리나라에서 우선 과세*

* 소재지국 미과세시 모기업소재국(IIR) → 타 구성기업 소재국(UTPR) 순으로 과세권 이전

- (대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국내구성기업
 - (내국추가세액 계산)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 전체의 실효 세율 계산 후,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 내국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실질 사업활동 지표인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제외

【적용 예시】

- 우리나라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 K의 자회사 K1, K2, K3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음

구분	K1기업	K2기업	K3기업	합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1,000	2,000	3,000	6,000
조정대상조세	200	0	400	600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200	300	700	1,200
내국추가세액 계산 과정	$\text{실효세율} = \frac{600}{6,000} = 10\%,$ $\text{추가세액비율} = 15\% - 10\% = 5\%,$ $\text{내국추가세액} = 5\% \times (6,000 - 1,200) = 240$			

- (추가세액 납부) 추가세액의 그룹 내(각 기업별) 배분은 소득에 비례하여 배분함이 원칙이나, 기업의 재량도 허용